

#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6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(안 제24조제3항)
- 나.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설(안 제24조의2)
- 다. 법령 개정사항,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(안 제12조, 제14조, 제16조)
- 라. 법령 위임 없이 주민제한 사항 등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(안 제11조, 제25조제3항, 제2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 
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예정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18. 11. 16.~12. 6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불임
  - 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”를 “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40조제3항”을 “제40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,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”를 “제30조제1항”으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경우에는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실·과”를 “담당관·과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
2.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,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
3.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** ① 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

자녀장학생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 
고등학교 재학생

2.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  
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.

1.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

2.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, 단체,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  
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

④ 장학생 인원, 장학금 금액,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알선 및”을 “알선,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 
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 
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4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)**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 
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 “전입정착금”이라  
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·  
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 
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 
자 와 가족 세대원

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 
다시 전입할 경우

2.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 
시·군·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,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 조 제목 “(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)”을 “(지원 취소·반환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각종 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조금 등의”를 “보조금”으로 “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휴·폐업”을 “휴업·폐업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4호·제5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자 전입정착금 적용례)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하여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</p> <p><u>제11조(공유재산 지원)</u>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2조(산업시설용지 지원)</u>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<u>제40조제3항</u>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.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<u>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,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</u> ③~④ (생략)</p> <p><u>제14조(이자 지원)</u>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<u>경우에는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1.~3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12조(산업시설용지 지원)</u>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<u>제40조제4항</u>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.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<u>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</u> 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4조(이자 지원)</u>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<u>경우에는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1.~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6조(우선구매 및 판로지원)</b> ① 군수는 <u>군의 실·과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에서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~③ (생략)</p> <p><b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</b> ① 군수는 <u>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를 포함한다)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기본부스(조립, 부스 2개)를 기준으로 하며,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.</u></li> <li>2. <u>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.</u></li> </ol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6조(우선구매와 판로지원)</b> ① 군수는 <u>군의 담당관·과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에서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</b> ① 군수는 <u>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를 포함한다)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</u></li> <li>2. <u>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,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</u></li> <li>3. <u>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</u></li> </ol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</b> ① <u>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② <u>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,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. 다만,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</u></li> </ol>	<p><b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</b> ① <u>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 자녀장학생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</u></li> <li>2. <u>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</u>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2.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.</p> <p>3. 학교, 단체,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.</p> <p>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,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</p> <p>1.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</p> <p>2.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</p> <p>제24조(근로자 주거지원)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<u>알선</u> 및 <u>진입도로</u> 개설,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.</p> <p>1.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</p> <p>2.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, 단체,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</p> <p>④ 장학생 인원, 장학금 금액,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.</p> <p>제24조(근로자 주거지원)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<u>알선</u>, <u>진입도로</u> 개설,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25조(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)           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<p>제24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 “전입정착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          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          1.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           2.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·군·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           3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        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,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5조(지원 취소·반환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         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</p> <p>2.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·폐업한 경우</p> <p>3.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</p> <p>4.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</p> <p>5.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<u>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6조(다른 조례의 준용)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	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</p> <p>2.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·폐업한 경우</p> <p>3.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</p> <p>4.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</p> <p>5.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

#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,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

나. 관련조문

- 1) 제24조제3항 :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
- 2) 제24조의2 :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 신설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세출	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	-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00,000
	소계	2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200,000

### 3. 관련 의견

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활성화,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와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### 1.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

$55\text{명} \times \text{월}30\text{만원} \times 12\text{개월} \approx 200,000\text{천원}$

### 2.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

$100\text{명} \times 50\text{만원/인당} = 50,000\text{천원}$

작성자 : 미래전략과장 임 영 수